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
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간선급행버스체계(이하 BRT)의 활성화를 위해 BRT의 운영 및 친환경차량 도입에 국비를 지원하는 등 「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을 개정('20.10.20. 공포)함에 따라, 국비 지원에 대해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BRT 운영 및 친환경차량 도입비용 지원(안 제27조제2항 신설 등)

BRT 운영 및 친환경차량 도입비용에 대한 지원 항목과 비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

또한 국비 지원이 의무에서 재량으로 변경 됨(법 제32조 개정)에 따라 시행령도 동일하게 자구 수정(보조하여야 한다→보조할 수 있다.)

나. BRT 운수종사자 자격 관련 조항 수정(안 제32조제2항제3호 개정)

운수종사자의 자격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준용하도록 함(법 제29조 삭제, 제31조 개정)에 따라 시행령도 동일하게 자구 수정(법 제29조 제1항제3호에 따른 →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체계건설사업”을 “체계건설사업 실시”로, “보조하여야 한다”를 “보조할 수 있다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체계건설사업 운영 및 동조 제2항에 따른 친환경 전용차량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경우 구체적인 항목과 비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

제32조제2항제3호 중 “법 제29조제1항제3호”를 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7조(국가의 재정지원) 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<u>체계건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여야 한다.</u> 1. 2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7조(국가의 재정지원) ① ----- ----- ----- <u>체계건설사업 실시----- 보조할 수 있다.</u> 1. 2. (현행과 같음) ②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체계건설사업 운영 및 동조 제2항에 따른 친환경 전용차량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경우 구체적인 항목과 비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
제32조(권한의 위임) ① (생략) ② 법 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한다. 1. 2. (생략) 3. <u>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수여</u> 4. (생략) ③ (생략)	제32조(권한의 위임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3. <u>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-----</u> 4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토교통부 간선급행버스체계과	
연 락 처	(044) 201 - 5121